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김호식

#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8년 3월 14일
- 회부일자 : 2018년 3월 15일

3.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개정으로 전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법률 제15291호, 2017.12.26., 일부개정, 2018.1.1.시행),
-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업무처리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외 도민의 권리구제 담당부서에 배치 (안 제3조)
-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인 5급 또는 4급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세무사 등 조세·회계·법률 분야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안건 심의, 고충민원 처리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안 제18조)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권리보호 요청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9조~안 제27조)
- 납세자권리현장 제정·준수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8조~안 제31조)

## 5. 검토의견

금번 제정조례안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 방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사무처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 외 도민의 권리구제 담당부서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고, 안 제4조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제18조까지는 안건 심의 및 고충민원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9조~제27조까지는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권리보호 요청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8조~제31조까지는 납세자권리현장 제정·준수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금번 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세금을 억울하게 부과 받았거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제도를 두도록

함에 따라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를 전담·수행할 수 있는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및 자격기준, 처리사무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도민들에게 지방세 납세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붙 임 :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1부. 끝.